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

본 자료는 2017년 7월 7일 개최된 제44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경영인 조찬회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

I. 검토 배경	5
----------	---

II. 의료행위의 의미 및 범위	7
-------------------	---

III.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	11
---------------------------	----

IV.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	12
---------------------	----

I. 검토 배경

- 만성질환의 발병률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만성질환의 발병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됨(WHO)
 - 보건복지부도 생활습관 개선을 국민건강증진계획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
 - 생활습관의 효과적인 개선으로 만성질환의 발병률 및 조기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생활습관을 개선할 경우 22~51%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기대수명의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2.7%에 달함²⁾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
 - 특히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됨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헬스케어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1) 보건복지부(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이는 단지 의료계와 비의료계 사이의 단순한 영역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 불명확성·불확실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찬회에서는 법과 판례상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가 어떠한지, 헬스케어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II. 의료행위의 의미 및 범위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현행 의료법은 많은 법조문에서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함)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의미는 “의료인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정도로 파악될 수 있을 뿐임

■ 이에,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내용은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 여부의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 한편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 이는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봄(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또한, “의료행위의 내용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 대법원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각종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

표 II-1 시술행위 등 의료행위로 판단된 사례

유형	내용
피부미용 시술행위	• 크리스탈 펄링기를 사용한 피부박피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 자동문신용 기계를 이용한 문신 시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침, 뜸 등 시술행위	•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 부항시술행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 찜질기구를 암 환자에게 건네주어 환자로 하여금 직접 찜질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 교육원에서 심전사혈요법을 강의한 행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안마, 지압, 척추교정술	• 두통, 불면증, 변비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한 행위(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 시력 회복을 위해 눈 주위에 안면 안마기를 사용한 행위(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도2190 판결) • 체육관 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디스크 치료 명목으로 배, 허리를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한 행위(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86 판결)

- 보험가입을 위한 방문검진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 간호사들이 보험가입자들을 방문하여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사안
 - 건강검진은 피검자의 신체부위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임
 - 비록 위 건강검진이 보험회사가 피검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료행위로서 성질과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머리카락 성분을 통한 건강 상태 분석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 베스트론이라는 혼합물질 분석기를 이용한 머리카락 성분의 성질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머리카락 제공자의 신체 각 부분의 정상 여부, 질병 발생 가능성, 성격, 추천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안
 - 머리카락 제공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판단한 행위는 의료행위로서의 진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건강보조식품판매와 관련하여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부작용을 상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인정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³⁾
 -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고객들에게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 측정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체지방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고, 고객의 체질 및 증상에 대한 72개 항목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비만 치유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위 식품을 복용한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건강상태 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⁴⁾

- 기능성 침대와 이불(혈액 속의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분해되어 적혈구가 활성화되는 쿼텀에너지)을 홍보하면서 제품 사용 전과 사용 후의 혈액을 비교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를 손가락에 장착하여 혈액의 활동 상태를 검사하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봄(의료자원과 2011. 1. 19)
-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무료로 손끝 혈당, 손끝 콜레스테롤, 혈압, 체지방 측정을 하는 행위(손끝 혈당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혈압기, 체지방 측정기 등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이 측정기를 사용)에 대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 측정 등을 포함한 진단행위들은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였을

3) 한편,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뱃가루를 판매함에 있어 그들의 증상에 대하여 듣고 손바닥을 펴보게 하거나 혀를 내보이게 한 후 뱃가루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경우, 그 행위는 뱃가루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음(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4)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발간한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회신 사례집』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후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참고하지 못하였음

경우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봄(의료자원과 2010. 10. 5)

-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영양사를 직원으로 두고 제품상담이나 식단에 관련된 영양상담을 하면서, 고객센터 차원에서 체성분 분석기와 혈압계를 매장에 설치하여 체지방, 혈압 등을 검사하는 행위(체성분 분석기는 헬스클럽, 일반 다이어트 매장에 있는 장비이고, 혈압계도 일반 은행에도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에 대해, 혈압, 혈당, 체온, 지방 측정 등은 진단보조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였을 경우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봄(의료자원과 2010. 10. 15)

■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례들은 대부분 신체에 대해 침습행위가 있거나 물리력이 가해지는 사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어서 헬스케어서비스 유형과는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으나, 대법원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건강상태 측정 및 검사 행위를 다룬 일부 사례들은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도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건강 상태나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판단한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라고 봄
 -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III.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

■ 비의료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0년 및 2011년에 발의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①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②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③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지도 및 훈련, ④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⑤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표 III-1 헬스케어서비스 세부 내용

유형	내용
①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의 견해에 대한 설명 •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 신체계측(체중, 복부둘레, 혈압 등)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②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 절주, 금연, 체중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③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지도 및 훈련	• 영양지도 및 영양평가 • 운동지도 및 운동평가 • 건강목표 설정, u-Health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측정 • 개별적 전화상담, SMS 발송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 점검
④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 건강 관련 인터넷 사이트 안내, 건강 관련 책자 발송 • 건강증진시설, 운동교실 등의 정보 제공
⑤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지속적 교육, 훈련, 상담, 모니터링 • 생활습관변화, 프로그램 진행상황, 신체계측결과 모니터링 • 실천상황 독려, 항목별 경고 메시지 전송, 목표치 안내 및 피드백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재구성

■ 비의료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음

-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이나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항목은, 단순 정보 제공 측면이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지도 및 훈련,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항목의 경우, 의료행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특정 개인에 대한 건강상태 상담, 영양·운동 등에 대한 조언, 그 결과나 영향에 대한 점검 및 측정, 맞춤형 목표 설정 등의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음
 -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임

IV.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

■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보면, 상식적으로 보아 반드시 의료인이 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의 경우에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시대 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법,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 판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와 구분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 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이므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인뿐 아니라 다른 전문 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임⁵⁾

■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이 마련 되었으며, 해당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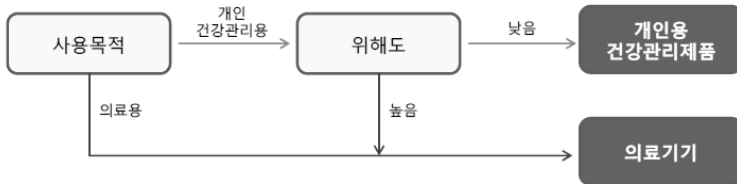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 10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제정하였음
 - 융복합·신개념 제품이 등장하면서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웰니스제품이

5) 보건복지부(2010. 6. 30), 「건강관리서비스 Q&A」

개발·시판됨에 따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비의료기기)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FDA 기준(General Wellness: Policy for Low Risk Devices)을 참고로 하여 제정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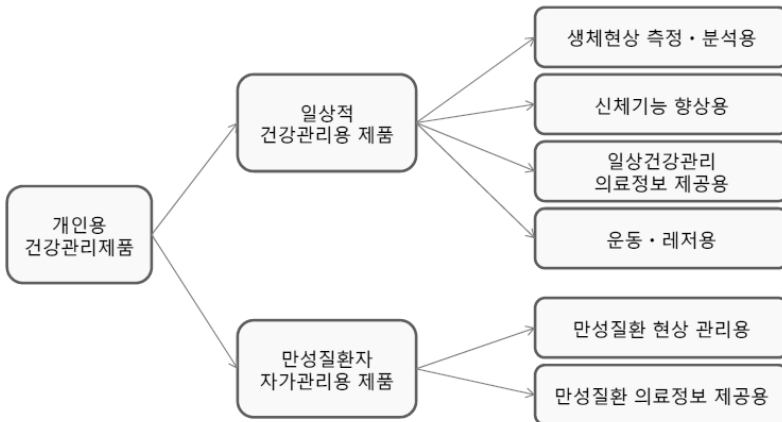
- 이에 의하면,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비의료기기로 봄
 - 만성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의 선택이 건강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적·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그러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은 비의료기기로 인정함

그림 IV-1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

그림 IV-2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유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시하고 있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다음과 같음
 -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의 예시:

(생체현상 측정·분석용)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체지방을 자가 측정하는 제품, 스트레스 정도를 알기 위하여 심박수 변화 등을 자가 측정하는 제품,

수면관리를 위하여 수면 중 움직임 정도를 자가 측정하는 제품, 개인의 건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호흡량을 자가 측정하는 제품, 매일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가 모니터 및 기록을 하고 심혈관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품, 휴대폰 카메라에 렌즈를 부착하여 피부를 확대해서 건조 상태를 확인하거나 센서를 이용하여 수분 정도를 자가 측정하기 위한 제품

(신체기능 향상용)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안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리 등을 제공하는 제품, 고령자의 낙상 위험도 측정을 통해 보행교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품

(일상건강관리 의료정보 제공용) 의학도서나 의료정보 관련 자료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앱, 응급처치방법 등을 안내하는 앱,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호흡훈련·인지훈련 방법을 제공하는 앱, 질병분류코드를 제공하는 앱, BMI 지수를 계산하는 앱,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앱

(운동·레저용) 운동이나 레저 활동 시 사용자의 심박수 또는 맥박수를 모니터하는 제품, 운동이나 레저 활동 시 사용자의 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하는 제품

-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의 예시:

(만성질환자 현상 관리용) 일상생활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앱, 자가 건강관리 목적으로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운동이나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앱, 고혈압·저혈압 환자가 혈압계로부터 측정된 혈압값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혈압값 등을 저장하는 앱, 고지혈증 환자가 개인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로부터 측정된 콜레스테롤 값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콜레스테롤 값 변화를 저장하는 앱

(만성질환자 의료정보 제공용)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법 제공 없이 스스로 질병이나 상태를 자가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앱, 고혈압·비만·당뇨 환자들의 영양섭취·체중조절·운동량 등을 안내하는 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질문·답을 퀴즈 형식으로 제공하는 앱

■ ‘의료기기’ 측면과 ‘의료행위’ 측면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의료와 건강관리 영역의 구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서의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서의 건강관리행위’의 구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행위 측면에서도 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

발행일 | 2017년 8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